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22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K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6 년 5 월 13 일

2019 년 4 월 1 일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의 절차적 체계를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 호를 발령한 바,

2023 년 6 월 20 일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에 관한 중재판정(이하 “판정”)을 선고한 바,

2023 년 7 월 17 일 피청구국은 1996 년 영국 중재법(이하 “1996 년법”) 제 67 조 및 제 68 조에 따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영국 고등법원은 Foxton 판사의 2026 년 2 월 23 일자 판결(중립적 인용 [2026] EWHC 368 (Comm)) 및 2026 년 3 월 18 일자 명령에 따라 한 가지 쟁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위하여 본 사건을 환송한 바,

2026 년 4 월 9 일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사건관리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양 당사자의 대리인 및 대표자, 중재판정부 중재인 전원, 그리고 상설중재재판소가 입회한 바,

2026 년 4 월 11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1996 년법 제 71 조 제 3 항에 정한 3 개월의 기한을 2026 년 9 월 30 일까지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여 줄 것을 구하는 공동신청서를 영국 상사법원에 제출하고, 환송된 중재절차의 절차일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요청한 바,

2026 년 4 월 24 일 당사자들은 상사법원에 합의명령(consent order)을 제출하였고, 2026 년 4 월 27 일 상사법원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기한 연장을 허가하는 명령을 발령한 바,

2026 년 5 월 1 일 중재판정부는 본 환송 중재절차의 심리 일정 및 진행방식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에게 이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2026 년 5 월 4 일 및 6 일 당사자들은 제안된 심리 진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절차일정 초안을 중재판정부에 회신한 바,

2026 년 5 월 6 일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선정약정서 부속서(Addendum to the Terms of Appointment)를 체결한 바,

2026 년 5 월 7 일 중재판정부는 심리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절차일정상 일부 단계에 관한 지시를 발령한 바,

2026 년 5 월 12 일 당사자들은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일정 및 심리에 관하여 합의된 제안을 중재판정부에 공동으로 통지한 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거친 결과, 본건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도달한 합의이자 중재판정부 역시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본 절차 명령에 기록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시를 정하는 바,

중재판정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절차 명령 제 1 호

1.1 절차 명령 제 1 호는 본 절차 명령 제 22 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건 환송 중재절차에 계속 적용된다.

2. 제출 및 서면

2.1 선정약정서(이하 “**약정서**”) 제 8.6 항 및 제 8.6.1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부속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환송 중재절차에서 서면 및 증거자료의 번역본 제출 기한은 해당 제출일로부터 2 주로 한다.

2.2 약정서 제 8.6 항 내지 제 8.6.2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부속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환송 중재절차에서의 모든 제출물 및 서면은 인쇄본의 송달 없이 전자적 형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3. 절차일정표

3.1 당사자들이 합의한대로, 본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일정표는 본 명령의 부속서에 첨부한다.

4. 문서제출

4.1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는 문서제출 단계를 두지 아니한다.

5. 새로운 증거의 인정

5.1 증인 및/또는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어떠한 새로운 사실증거도, 본 절차 명령 제 5.2 항 내지 제 5.4 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5.2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새로운 증거의 인정을 정당화하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중재판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 신청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기록에 포함되기를 구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상대 당사자에게는 동 신청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가 부여된다.

5.4 허가가 부여되는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경우 대응 문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된다.

6. 심리

6.1 환송 중재절차의 심리는 2026 년 7 월 27 일 및 28 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2026 년 7 월 29 일을 예비일로 지정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부속서: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일정표

서면/항목	주체	일자
환송 쟁점에 관한 청구인의 서면	청구인	2026년 4월 27일
피청구국의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	피청구국	2026년 5월 13일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청구인	2026년 5월 20일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중재판정부	2026년 5월 25일
환송 쟁점에 관한 피청구국의 서면	피청구국	2026년 6월 5일
환송 쟁점에 관한 청구인의 반박 서면	청구인	2026년 6월 26일
환송 쟁점에 관한 피청구국의 재반박 서면	피청구국	2026년 7월 17일
구술심리(워싱턴 D.C.)	중재판정부 / 당사자들	2026년 7월 27-28일 (2026년 7월 29일 예비일)
환송 쟁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재판정부	2026년 9월 30일